

2019.07.

2019년 세법개정안 - 법인세

1. 지주회사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방식 변경 (조특법 §38의2)

□ 개정 전

법인 또는 개인주주가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대상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됨

이 경우 과세이연된 세금은 법인 또는 개인주주가 현물출자의 대가로 수령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됨

□ 개정내용

개정 전 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주주에게 과세되었어야 하는 세금을 사실상 무기한 이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주주가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관련 세금은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하도록 개정됨

□ 개정의 효과

구조조정에 관한 다른 세제 혜택 규정과 달리 조특법 제38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 시에는 사실상 현물출자 대상 주식의 미실현이익이 과세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향후 동 규정을 이용한 구조조정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적용시기

2021. 12. 31. 이전까지 출자하는 분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규정이 적용되며, 개정 후의 규정은 2022. 1. 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됨

2. 업무용승용차 과세제도 합리화

(1)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법인령 §50의2 ⑦)

☐ 개정 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연간 1,000만원 이하는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손금 인정

☐ 개정내용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손금 인정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범위를 연간 1,500만원으로 상향

☐ 개정의 효과

고가의 차량이 아님에도,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금액이 손금불산입되는 부담이 존재하였으나, 이러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연구개발용 차는 업무용 승용차에서 제외 (법인법 §27의2 ①)

☐ 개정내용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자율주행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 개정의 효과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많은 부품제조사들이 겪던 실무상 문제(연구개발목적 차량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신고의무)를 해결

☐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 이월된 기부금을 먼저 공제 (법인법 §24)

☐ 개정 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

□ 개정내용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

□ 개정의 효과

이월기간(10년) 내에 안정적으로 기부금 공제 가능

□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국고보조금은 기한 경과한 결손금에 충당 못해 (법인법 §18)

□ 개정내용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자산수증이익) 중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제외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

□ 개정의 효과

국고보조금의 익금불산입 효과와 이월결손금에 충당하는 효과가 중복으로 적용되는지에 관한 실무상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리스회계기준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 세무처리 유지(법인령 §24 ⑤)

□ 개정 전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분하여 세무처리도 이를 준용

□ 개정내용

K-IFRS의 리스회계기준이 변경(운용리스에 대해서도 금융리스와 유사하게 회계처리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이와 무관하게 종전의 감가상각 방식을 유지(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 자산, 운용리스는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

□ 개정의 효과

기업회계기준 변경으로 법인세 신고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임원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 증가 예상(소득법 §22 ③)

□ 개정 전

임원의 경우 2012년 이후분 퇴직소득에 대하여,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 '12년 이후 근속연수 × 지급배수(3배)”를 초과하는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개정내용

적용되는 지급배수를 3배 → 2배로 조정

□ 개정의 효과

2020. 1. 1. 이후 퇴직하는 임원부터 세부담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

□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적용

(1)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조특법 §25)

□ 개정 전

공제율 :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

□ 개정내용

공제율 : 대기업 2%,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시행일 이후 1년간만 상향)

□ 개정의 효과

단기적 투자유인이 증대되어 기업의 투자를 유발하는 효과가 기대됨

□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5, 조특칙 별표2)

□ 개정 전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투자시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6%의 세액공제를 적용 (2019. 12. 31.까지)

□ 개정내용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는 적용기한이 종료되고, “의약품 제조 첨단설비”와 “물류산업 첨단설비”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으로 새로이 규정.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1. 12. 31.까지 연장

□ 개정의 효과

첨단시설에 대한 투자 촉진 효과가 기대됨

□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8. R&D 세액공제 확대 적용

(1)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등 확대 (조특법 §144 ①, 조특령 별표7, 조특칙 §7)

□ 개정내용

(공제대상 확대)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바이오베터 임상시험 기술 포함

(위탁 R&D비용 인정기관 확대)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연구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위탁 R&D 비용도 세액공제 가능

(이월기간 확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은 ‘5년’ → ‘10년’간 이월 가능

□ 개정의 효과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대한 비용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그간 제한적으로 수행되던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R&D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조특법 §9 ②)

□ 개정 전

서비스 R&D의 경우, 자체 R&D 비용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 과학기술 분야의 R&D비용은 위탁·공동 연구비도 세액공제 적용 대상

□ 개정내용

서비스 R&D에 대하여 위탁·공동 연구비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과학기술과 결합된 서비스 R&D에 한정하여 적용)

□ 개정의 효과

과학기술과 서비스가 결합된 R&D 비용의 경우, 세액공제 여부가 불투명했던 실무상 쟁점이 해소되고, 서비스 분야에 대한 R&D 활성화 기대

□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9.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도 상생협력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조특법 §8의3)

□ 개정내용

(적용 대상 확대)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

(적용기한 연장) 기금출연, 자산 무상임대, 수탁기업 연구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을 2022. 12. 31.로 연장

□ 개정의 효과

상생협력 지원으로, 중소 협력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황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CONTACT



송상우 회계사

02-528-5408

sangsong@yulchon.com



이민규 회계사

02-528-5867

mkleee@yulchon.com



안영화 회계사

02-528-5096

yhan@yulchon.com



김정준 회계사

02-528-5250

jjkim@yulchon.com



**INNOVATIVE
LAWYERS2018**
ASIA-PACIFIC WINNER



NATIONAL FIRM OF THE YEAR
SOUTH KOREA
CHAMBERS ASIA-PACIFIC AWARDS

Yulchon LLC

Korea | Vietnam | China | Myanmar | Russia | Indonesia*

* in association with Roosdiono & Partners

[구독신청](#) | [율촌 간행물 더 보기](#) | [Contact Us](#)

법무법인(유) 율촌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